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으로 세계일류 문화국가 실현			
	보도시점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2. 12. 6.]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무형문화재과	전화번호	042-481-4739 042-481-4968
담당자	이에나 사무관 이재필 학예연구관	F A X	042-481-4759 042-481-4979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www.korea.kr)정책정보」에 동시 게재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정

문화재청(청장 김 찬)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 신청한 아리랑이 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서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으로 등재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15건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번 등재결정에는 특정 지역의 아리랑이 아닌 전 국민의 아리랑으로서 세대를 거쳐 재창조되고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는 아리랑의 모습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우리나라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법 제도와 조직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도 결정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리랑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로 무형유산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 민요인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계기로, 각 지역에 산재한 아리랑의 전승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아리랑 전승 활성화 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전승 활성화 방안은 아리랑의 국내외 위상과 가치를 고려하여 국민의 높아진 문화향유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대외 문화외교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리랑의 다각도 진흥 전략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리랑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 ‘아리랑 아카이브 구축’, ‘아리랑 상설 및 기획 전시’, ‘아리랑 국내외 정기공연 개최’, ‘아리랑 학술조사 및 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 아리랑 축제 지원’, ‘국의 주재 교육원을 활용한 아리랑의 보급 선양’ 등이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아리랑 전승 활성화 방안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리랑은 올해 6월 정선아리랑에서 전 국민의 아리랑으로 확대된 신청서가 제출되어 지난 11월 초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 (Subsidiary Body)로부터 만장일치로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 붙임 1. 아리랑 등재 추진 현황.
- 2. 아리랑 전승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끝.

공공누리 구분	이용 허락 범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붙임 1)

아리랑 등재 추진 현황

1 추진배경

-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의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국내 인식 제고 및 국내외 확산
- 조선족 문화에 대한 중국의 유네스코 목록 등재 가능성 대비
 - ※ 조선족 아리랑은 중국의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음('11.5월)

2 추진일정

- '09. 8월 정선아리랑 등재신청서 제출
- '12. 1월 '12년 우선 심사대상으로 아리랑 선정
- '12. 6월 아리랑 수정 등재신청서 제출
 - ※ 정선아리랑의 공동체 범위를 확장하여 전국민이 부르는 아리랑으로 수정
- '12. 11월 1주 위원회 개최 4주 전 심사보조기구 권고결과 공개
 - ※ 총 36종목 중 아리랑 포함 총 18종목 등재권고
 - ※ 아리랑은 심사보조기구 개별심사에서 인도 '라다크의 불교 독송'과 함께 만장일치로 등재 권고한 2종목 중 한 종목
- '12. 12. 5.(현지시각) 아리랑 인류무형유산 등재 결정
 - ※ 등재 결정 :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12.12.3.~7), 프랑스 파리

3 등재의미

-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로서, 최초로 일부 전승자가 아니라 전 국민이 행하는 무형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가시성 제고 및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심사보조기구 개별심사에서 만장일치로 등재권고를 받음으로써 무형유산으로서 아리랑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정 및 등재신청서 작성에 대한 한국의 전문성 발휘

□ 유산개요

- 아리랑은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로 여러 세대를 거친 한국 국민들의 집단적인 기여로 만들어졌다. 아리랑은 기본적으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를 포함한 후렴구와 가사로 이루어진 노래군을 가리키며, 지역마다 독특한 아리랑이 전승된다. 아리랑의 노랫말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단순하면서도 문학적인 가사와 음률 덕택에 즉석에서 지어 부르기, 따라 하기, 함께 부르기 등이 쉽고, 다른 음악 장르에도 쉽게 수용된다. 아리랑은 인간 창의성, 표현의 자유 등을 존중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어느 누구라도 아리랑을 지어 부를 수 있으며, 이로써 지역의 아리랑을 풍성하게하고 문화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다. 공동체, 단체, 개인을 포함한 지역 아리랑 전승자들은 지역 개별 아리랑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아리랑의 대중화와 전승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 아리랑은 영화, 뮤지컬, 춤, 문학작품 등 다양한 예술분야에 주제로 활용되고 있다. 아리랑은 한국 영토 안팎에 있는 한민족의 대화와 단결을 촉진하는 힘이 있다.

□ 권고내용

- (R1) 아리랑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창조되며 공동체의 정체성의 징표이자 사회적 단결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 (R2) 아리랑이라는 하나의 유산에서 대단한 다양성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아리랑의 등재로 무형유산 전반의 가치성 향상되고 대화 증진, 문화 다양성 및 인간 창의성에 대한 존중 제고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 (R3) 아리랑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계획 수립에 공동체가 참여하였으며, 정부 차원에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R4) 등재 과정에서 관련 학자, 연구자, 지방정부, 공동체의 참여가 확보되었으며, 등재에 대한 동의서가 확보되었다.
- (R5) 오랜 논의를 거친 결과, 아리랑은 2012년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에 등록되었다.

(붙임 2)

아리랑 전승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정책 방안	주요 내용
① 아리랑의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아리랑을 국가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명칭변경)으로 지정 추진
② 아리랑 아카이브 구축	2013년 9월 개관 예정인 ‘국립무형유산원’의 아카이브 공간 활용
③ 아리랑 성설 및 기획 전시	‘국립무형유산원’ 아리랑 아카이브를 활용한 상설 전시 및 등재기념 기획전시 정기 개최
④ 아리랑 국내외 정기공연 개최	아리랑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후 관련 전승공동체가 참여하는 국내 공연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아리랑을 주요 주제로 한 인류무형유산 등재 종목 국외 기획공연 확대
⑤ 아리랑 학술조사 및 연구 지원	아리랑 연구 성과 발표 및 전승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정기 학술대회 개최 지원, 국외 무형문화유산 전승실태 조사 등 아리랑 조사·연구 강화
⑥ 지방자치단체의 아리랑 축제 지원	지역별 특색을 지닌 아리랑의 보급·선양 및 지역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승공동체가 활동하고 있는 지자체의 아리랑 축제 지원
⑦ 국외 주재 교육원을 활용한 아리랑의 보급선양	국외 교육원을 활용한 아리랑 등 무형유산 보급 활동 지원
⑧ ‘한민족 아리랑 센터’ 설립 추진	국내 다문화 구성원, 외국인 노동자, 고려인·조선족 등 국외 이주민, 국외 입양 가정 등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